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과제에 대한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9. 12. 20.(금)오후2시
- 장 소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자,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농업계의 관심은 기본소득보장과 연계한 농민수당 도입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업현장에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이 가능해 질 때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농업과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어떤이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포플리즘’이라며 과도한 복지로 몰아갈지 모르겠으나 농업이 지닌 공익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유일하게 ‘농업정책’만 가입 국가의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소에서도 기존 직불제의 한계와 농가내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삶의 질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적인 이유로 농촌과 농업이 사라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한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결국 재정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가진 재원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각계각층 전문가를 모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I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12. 20.(금) 14:00 ~ 16:00
- 장 소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3층 소강당 (청양군 학사길 55)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신청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의원)
- 주 제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과제 토론
- 참석예정 : 80명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II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한기수 전문위원
14:05~14:10	05'	내빈소개, 개회사 등	김명숙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김명숙 의원
14:10~14:40	30'	주제 발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4:40~15:20	40'	지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근혁(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박영숙(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박상우(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박지홍(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15:20~15:50	30'	자유 토론	참여자 전체
15:50~16:00	10'	정리 및 폐회	좌장(김명숙 의원)

※ 사회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한기수 전문위원

목 차

■ 주제발표

- ☞ 충청남도 농민수당 추진방향 (합리적 지급방식을 위한 제안) 1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

- ☞ 새로운 질서의 시작 농민수당 19
이근혁(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의 제언 29
박영숙(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과제 31
박상우(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도의 입장 35
박지홍(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주제발표

■ 충청남도 농민수당 추진방향

(합리적 지급방식을 위한 제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농민수당 추진방향

(합리적 지급방식을 위한 제안)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경 철

충청남도 농민수당 추진 방향: 합리적 지급방식을 위한 제안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2019. 12. 20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발표 내용

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현황과 개념
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따른 지급액
3. 개별 지급에 관한 쟁점과 제안

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현황과 개념

농민수당을 받아보니..(농민수당을 받은 한 여성농민의 후기)

.....

우째든 50만원 상품권을 받아드니 배짱이 생긴다.

곧 아이들이 올텐데 오미자도 따고 고추도 따고 일도 시킬건데 뭘 좀 해먹일까?

일단 차에 기름도 든든하게 채우고, 허술한 전지가위도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일본제품말고 단단한 거 뭐 없나 하고 철물점을 기웃거렸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농민수당이 매달 지급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농사빛에 눌러 먹고 살기에도 벅찬

농민들에게 공익적 기능은 먼 나라 이야기일뿐...

농촌에서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자부심을 느낄 겨를이 없다.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뭐라도 하나를 몰아서 심어야지 돈이 되지.. 이것저것 심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에 작물 다양성은 깨어진 지 오래다.

물론 다들 몰아서 심은 결과는 참담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농민들만의 잘못이겠는가?

하지만 농가 경영체별이 아닌 여성농민, 청년농민 개별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정기적으로 매달 주어진다면 농업, 농사, 농촌에 사는 다양한 삶의 방식의 모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가족농 중심의 중소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농가 행태들의 농촌 진입과 다양한 작물들, 땅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생태적인 순수 기능의 농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출처: 다음카페 자연농원 따뜻한 뿌리 2019.10.09. 01:47

전체 지자체 농민수당 도입 현황(2019. 12. 13 기준)

<광역/기초 지자체> (*빨간색: 시행 중 또는 확정 지자체)

-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 완료
- 강원도 : 2020년 18개 전 지자체 도입
- 경기도: 2020년 6개 시군 농민기본소득제 우선 도입/여주, 이천(2020)
- 경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서명 완료/ 의령, 합천(2020)
- 경북도: 농민단체와 민주당에서 도입 논의/봉화, 청송(2020)
- 전남도 : 2020년 22개 전 지자체 도입/강진(2018), 해남, 화순, 함평(2019)
- 전북도 : 2020년 14개 전 지자체 도입/고창(2019)
- 충남도 : 2020년 15개 전 지자체 도입/부여(2019)
- 충북도 :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서명 완료, 농가기본소득보장제 모색
- 제주도: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서명 완료

각 지자체 농(어)민수당 지급액 비교(연간)

비교		금액(연간)	실시 연도	특기사항
광역	전남도	60만원/농어가	2020	농어민 공익수당 추후 농어민 개별 지급 합의
	전북도	60만원/농가	2020	농민 공익수당 2019.7.1. 협의했으나 농민단체 요구로 재협의 중
	경기도	60만원/농민	2020	6개 시군 우선 시행/2021년 15개/2022년 31개 확대
기초	강진군	70만원/농가	2018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명목 3ha 미만 농가 대상
	해남군	60만원/농가	2019	최초 농민수당
	화순군	120만원/농가	2019	4/4분기 30만원 지급
	함평군	120만원/농어가	2019	농어가 수당
	고창군	60만원/농가	2019	
	부여군	14만원/농가	2019	2021년부터 개별 지급
	여주시/이천시	60만원/농가	2020	
	청송군	60만원/농가	2020	당해연도 사용 상품권 지급
	봉화군	50만원/농가	2019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명목
	농민단체(진보정당)	A농민단체	240만원/1인	2020
B농민단체		120만원/1인	2020	월 10만원

농민수당 최대 쟁점: 지급 액수, 지급 방식

농민단체 전남도의회서 '상여 집회'...농민수당 조례 '전운'
뉴스1(2019.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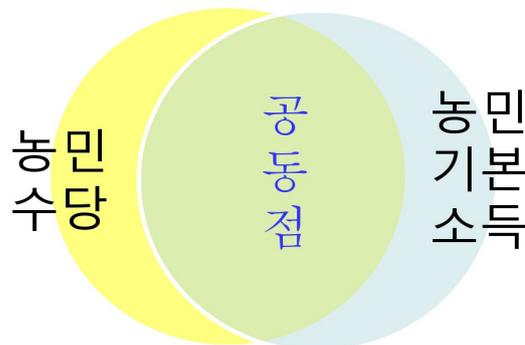


농민수당 '민의' 외면하는 지방의회
한국농정신문(2019.9.26)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란 무엇인가?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농민수당의 성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 보상적 성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약 252조원(농진청, 2012)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규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9조, 44조~6조
 - (1)식량의 안정적 공급 (2)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3)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5)생태계의 보전 (6)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 (1)안정적 식량 공급
 - (2)토양·물·공기·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 (3)농촌경관 유지
 -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그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계도
출처: 팜인사이트(2018.3.9)

농민기본소득의 성격

✓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기본생존권 보장: 기본권적 성격

-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삶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좀더 ‘특별한 의미’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제(basic income)의 정의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직업 여부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원칙: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충분성)

■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부에 대한 균등한 분배 구현)

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따른 지급액

전국 농업경영체 현황

충남도: 187,312개/전국 11.3%
경북>전남>경기>경남>충남..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14,443	0.9%	16,022	1.0%	17,078	1.0%	18,336	1.1%
부산광역시	17,465	1.1%	17,974	1.1%	18,431	1.1%	18,932	1.1%
대구광역시	30,172	1.9%	31,372	1.9%	32,733	2.0%	33,928	2.0%
인천광역시	21,880	1.4%	22,273	1.4%	22,617	1.4%	22,713	1.4%
광주광역시	22,794	1.4%	23,669	1.5%	24,302	1.5%	24,992	1.5%
대전광역시	19,793	1.2%	20,311	1.3%	21,113	1.3%	21,682	1.3%
울산광역시	22,975	1.4%	23,708	1.5%	24,166	1.5%	24,518	1.5%
세종특별자치시	9,712	0.6%	10,069	0.6%	10,614	0.6%	11,180	0.7%
경기도	203,440	12.8%	207,206	12.8%	209,265	12.7%	208,775	12.6%
강원도	98,866	6.2%	100,311	6.2%	102,072	6.2%	102,019	6.2%
충청북도	103,223	6.5%	105,444	6.5%	106,913	6.5%	107,422	6.5%
충청남도	182,357	11.5%	184,184	11.4%	186,342	11.3%	187,312	11.3%
전라북도	14,117	8.9%	143,007	8.8%	145,328	8.8%	145,984	8.8%
전라남도	213,446	13.4%	215,407	13.3%	217,290	13.2%	219,465	13.2%
경상북도	249,744	15.7%	254,390	15.7%	258,869	15.7%	261,312	15.8%
경상남도	191,544	12.0%	194,762	12.0%	198,122	12.0%	199,249	12.0%
제주특별자치도	46,824	2.9%	48,245	3.0%	49,644	3.0%	50,808	3.1%
총 계	1,589,795	100%	1,618,354	100%	1,644,899	100%	1,658,627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충남 농업경영체 현황

천안 > 서산 > 당진 > 논산 > 공주..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천안시	17,241	9.5%	17,295	9.4%	17,472	9.4%	17,464	9.3%
공주시	14,181	7.8%	14,294	7.8%	14,358	7.7%	14,467	7.7%
보령시	11,654	6.4%	11,883	6.5%	12,181	6.5%	12,430	6.6%
아산시	13,597	7.5%	13,534	7.3%	13,784	7.4%	13,783	7.4%
서산시	16,215	8.9%	16,482	8.9%	16,636	8.9%	16,746	8.9%
논산시	14,800	8.1%	15,046	8.2%	15,348	8.2%	15,395	8.2%
계룡시	955	0.5%	1,011	0.5%	1,063	0.6%	1,071	0.6%
당진시	16,670	9.1%	16,734	9.1%	16,747	9.0%	16,541	8.8%
금산군	9,880	5.4%	10,143	5.5%	10,244	5.5%	10,239	5.5%
부여군	13,581	7.4%	13,629	7.4%	13,729	7.4%	13,985	7.5%
서천군	9,066	5.0%	9,111	4.9%	9,181	4.9%	9,241	4.9%
청양군	7,757	4.3%	7,930	4.3%	8,146	4.4%	8,291	4.4%
홍성군	13,081	7.2%	13,185	7.2%	13,357	7.2%	13,419	7.2%
예산군	13,240	7.3%	13,357	7.3%	13,452	7.2%	13,511	7.2%
태안군	10,438	5.7%	10,550	5.7%	10,644	5.7%	10,729	5.7%
총계	182,357	100%	184,184	100%	186,342	100%	187,312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충남 농업인 현황

서산 > 당진 > 천안 > 논산 > 공주..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천안시	27,524	9.1%	25,977	8.8%	25,265	8.9%	24,695	8.8%
공주시	24,215	8.0%	23,271	7.8%	22,320	7.8%	22,162	7.9%
보령시	19,917	6.6%	19,710	6.6%	18,827	6.6%	18,856	6.7%
아산시	19,311	6.4%	18,646	6.3%	18,624	6.5%	18,703	6.6%
서산시	27,497	9.1%	27,252	9.2%	25,834	9.1%	25,579	9.1%
논산시	24,176	8.0%	24,043	8.1%	23,510	8.3%	23,235	8.2%
계룡시	1,513	0.5%	1,512	0.5%	1,497	0.5%	1,483	0.5%
당진시	28,215	9.4%	27,944	9.4%	25,931	9.1%	25,056	8.9%
금산군	16,325	5.4%	16,609	5.6%	15,990	5.6%	15,678	5.6%
부여군	22,967	7.6%	22,685	7.6%	21,724	7.6%	21,880	7.8%
서천군	15,208	5.0%	14,726	5.0%	14,217	5.0%	14,171	5.0%
청양군	12,917	4.3%	13,133	4.4%	12,642	4.4%	12,732	4.5%
홍성군	22,189	7.4%	22,024	7.4%	20,991	7.4%	20,800	7.4%
예산군	21,861	7.3%	21,786	7.3%	20,706	7.3%	20,527	7.3%
태안군	17,488	5.8%	17,406	5.9%	16,713	5.9%	16,595	5.9%
총계	301,323	100%	296,724	100%	284,791	100%	282,152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

전국 농업경영체			충남 농업경영체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1인	924,990	55.8%	1인	98,924	52.8%
2인	687,919	41.5%	2인	82,592	44.1%
3인	40,972	2.5%	3인	5,170	2.8%
4인	4,531	0.3%	4인	599	0.3%
5인 이상	215	0.0%	5인 이상	27	0.0%
전체	1,658,627			187,31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방식에 따른 소요 예산

방식1: 개별 농민 단위 지급 시

1) 개별 농민당 50원 지급 시 ⇒ 141,076백만원

2) 개별 농민당 60원 지급 시 ⇒ 169,291백만원

방식2: 할증방식 적용 시

1)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50만원, 2인 80만원, 3인 이상 100만원 지급 시 ⇒ 121,332백만원

2)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60만원, 2인 90만원, 3인 이상 120만원 지급 시 ⇒ 140,642백만원

방식3: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 시

1) 농업경영체(농가)당 50만원 지급 시 ⇒ 93,656백만원

2) 농업경영체(농가)당 60만원 지급 시 ⇒ 112,387백만원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방식에 따른 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분	모델1: 농업인 개별 지급		모델2: 할증방식		모델3: 농업경영체 지급	
	50만원	60만원	1안 (50만원 기준)	2안 (60만원 기준)	50만원	60만원
충남 전체	141,076	169,291	121,332	140,642	93,656	112,387
천안시	12,348	14,817	10,844	12,632	8,732	10,478
공주시	11,081	13,297	9,474	10,971	7,234	8,680
보령시	9,428	11,314	8,093	9,374	6,215	7,458
아산시	9,352	11,222	8,334	9,738	6,892	8,270
서산시	12,790	15,347	10,950	12,681	8,373	10,048
논산시	11,618	13,941	9,988	11,573	7,698	9,237
계룡시	742	890	657	766	536	643
당진시	12,528	15,034	10,751	12,460	8,271	9,925
금산군	7,839	9,407	6,701	7,760	5,120	6,143
부여군	10,940	13,128	9,302	10,747	6,993	8,391
서천군	7,086	8,503	6,068	7,015	4,621	5,545
청양군	6,366	7,639	5,434	6,295	4,146	4,975
홍성군	10,400	12,480	8,856	10,248	6,710	8,051
예산군	10,264	12,316	8,803	10,196	6,756	8,107
태안군	8,298	9,957	7,077	8,187	5,365	6,437

지급 방식에 따른 장단점

지급 방식

농민 개별 지급

기본소득 원칙 충실
여성농, 청년농 권리 신장
사회적경제 활동 증진
인구 유입 효과 증대

할증 방식 지급

개별 지급을 위한 준비
노인기초연금 방식 학습
개별성을 어느 정도 존중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

행정비용 절감
농정사업 방식 준용

장점

단점

행정비용 증대
통계체계 미흡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
가짜 농민 양산 가능성

애매한 지급 방식
개별지급 전환 어려움

농업경영체 분리 양산
도시지역 농업인 유리
여성농, 청년농 소외
기본소득 원칙 부적합

3. 개별 지급에 관한 쟁점과 제안

개별 지급에 대한 공감대 일치

✓ 농민단체

- 지급 액수가 적더라도 개별 지급 요구: 여성농민, 청년농민 포용
-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 부합: 기본소득의 개인에 부여한 권리 예)투표권
- 지급액 상향은 추후 지속적 논의 필요

✓ 충남도

- 농민단체의 요구 충분히 이해
- 하지만 농업인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고 농업인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시 혼란 가능성
- 농업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통계체계의 명확한 구축 후 개별 지급 가능

농업인 선별에 관한 이견

✓ 농민단체

- 농업인 선별은 농민단체와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
- 마을 단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별 가능

✓ 행정당국

- 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농업인 통계를 신뢰하기 어려움
- 직불제 부당수령과 같이 현실에서 농업인 규정 한계. 선의의 피해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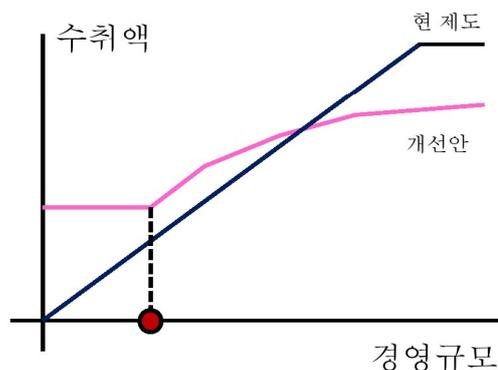
✓ 연구자

- 정부의 농업인 통계 바탕으로 추진 필요. 공익형 직불제 실시에 따른 통계 강화 예상
- 마을, 읍면동, 시군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교차 확인 가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개념의 공익형 농업직불제로 개편 중

- 일정 경지 면적 이하 균일 지불: 기본직불
- 논밭 구분 없음
-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강화



재정 규모별 농업직불제 개편 효과

- 2.4조원일 때 0.5ha 미만 농가는 약 두 배 이상 증가
- 4ha 이상은 감소
- 3조원 이상 규모일 때 전 농가 혜택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시

농민수당 도입 시 야기된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

향후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방식 제안

✓ 1순위: 개별 지급 실행

- 농민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맞게 과감한 정책 전환 선도 필요
- 지급은 다소 늦더라도 정책적 효과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2순위: 할증 방식 실행

- 개별 지급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으로 실행: 경기도 6개 시군 개별 지급
- 농민수당이 필요한 농촌지역에 훨씬 유리: 농촌지역일수록 경영체 내 종사자 다수

✓ 3순위: 농업경영체 단위 실행

- 농민수당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타 지자체 비교 정책적 선진성 부족
- 한번 시작하면 개별 지급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 예상

향후 과제

✓ 개별 지급을 위한 로드맵 제시 및 재원 확보

- 개별 지급을 우선으로 하되 당장 실시 어려운 경우 향후 실시 방안 제시
- 농민수당 재원 확보: 1) 농정예산 혁신: 농정예산 혁신을 위한 민관연 협의체 구성
2) 추가 재원은 반드시 필요: 도지사의 의지 중요

✓ 농촌 내 은퇴농,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포용

- 은퇴농, 경영체 미등록 농가가 합법적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도-시군 간 협의를 통해 은퇴농, 배제 농민 등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중장기적으로 '농촌 소멸' 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 도입 필요
(경기도 2020년 시범사업 예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 ☞ 새로운 질서의 시작 농민수당
이근혁(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의 제언
박영숙(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과제
박상우(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도의 입장
박지홍(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새로운 질서의 시작 농민수당

(성과 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농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정으로)

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이 근 혁

충남 또한 농민수당이 농업계뿐만 아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주민발의 조례제정 절차의 첫 순서인 대표청구인 접수 이후, 2달여간의 기간 동안 1,000명의 수임인이 활동하며 3만5천여명의 충남농민·도민 분들이 청구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2달만에 3만5천여명의 농민·도민분들이 청구서명에 동참해주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충남농정, 나아가 한국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구인명부 제출 이후, 3만5천 농민·도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남도청,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충남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충남농정의 새로운 질서!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정책!
- 충청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 -

[1. 청구인명부 제출 보고 및 이후 계획]

1.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 운동 목표

- 농민과 도민의 힘을 모은 조례 제정으로 농민수당 제도 도입

2. 조례 제정 청구권자 총수(충청남도 공고 제2019-51호)

19세 이상 주민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 고
합계	내국인	외국인		
1,749,889	1,746,197	3,692	17,499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3. 10월 8일 청구인명부 제출 경과 및 결과 보고

- 7월 9일(화) : 운동본부 결성
- 7월 25일(목) :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공표 기자회견 / 대표청구인 접수
- 8월 6일(화) : 수임인 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 9월 9일(월) : 농민수당 중간보고 및 주민 입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10월 8일(화) : 35,318명의 청구인 명부 제출

4. 향후 계획

- 새로운 질서! 충남 농민수당에 대한 정책 선전 및 교육
- 주민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 제정을 위한 활동

5.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운동 현황

①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가입단체 현황(총 36개 단체)

충남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준), 가톨릭농민회 대전교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민주당 충남도당,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천안아산, 한살림 대전(부여 매장)

② 대표청구인(총 5명)

-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 문용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 서짐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 준비위원장
-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김영호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③ 수임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인) 시군별 현황

공주	금산	계룡	논산	당진	보령
14	7	4	35	222	31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50	20	195	67	187	138
청양	태안	홍성	전체 1,001명		
12	4	15			

④ 청구인서명 시군별 현황 : 총 35,318명

공주시 632명	중동	봉황동	송선동	소학동	충학동	반포면	쌍신동
	6	3	3	6	1	1	1
	봉정동	우성면	이인면	의당면	탄천면	정안면	월미동
	1	41	53	39	13	15	1
	사곡면	계룡면	유구읍	신평면	신평동	웅진동	상왕동
	17	47	24	12	139	46	4
	산성동	금학동	교동	옥룡동	중학동	금성동	주미동
	7	18	20	47	5	6	4
계룡시 267명	월성동	신기동	금홍동				
	20	2	30				
계룡시 267명	신도안면	두마면	금암면	엄사면			
	11	25	35	196			
금산군 249명	군북면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남이면	복수면	부리면
	16	93	29	2	5	7	7
	제원면	진산면	추부면				
논산시 2,306명	7	10	73				
	강경읍	강산동	가야곡면	관촉동	광석면	내동	노성면
	48	56	199	12	138	247	35
	등화동	벌곡면	부창동	부적면	상월면	성동면	반월동
	3	28	64	48	290	152	10
	지산동	덕지동	채운동	대교동	연산면	화지동	취암동
15	6	49	47	146	21	177	
당진시 9,853명	은진면	양촌면	연무읍				
	47	46	422				
당진시 9,853명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고대면	송산면	대호지면	합덕읍
	508	1340	364	721	691	1127	674
	석문면	우강면	면천면	순성면	송악면	정미면	신평면
보령시 1,109명	706	801	456	489	776	429	771
	동대동	웅천읍	죽정동	요암동	신흥동	대천동	대천2동
	18	34	61	6	18	60	5
	명천동	궁촌동	봉천동	남곡동	석남동	화산동	내항동
	72	11	2	7	1	4	9
	천북면	청소면	미산면	오천면	주산면	성주면	주포면
44	25	9	17	9	10	55	
부여군 4,305명	청라면	주교면	남포면				
	222	177	233				
	부여읍	규암면	홍산면	구룡면	장암면	세도면	은산면
	742	441	275	91	512	69	142
	초촌면	외산면	옥산면	석성면	내산면	남면	임천면
444	416	117	364	316	37	59	
서산시 682명	양화면	충화면					
	193	87					
서산시 682명	인지면	읍내동	석림동	부석면	동문동	대산읍	죽성동
	30	72	44	70	119	49	25

	고북면	예천동	음암면	성연면	팔봉면	해미읍	석남동
	4	53	57	43	40	12	17
	지곡면	운산면	오남동	수석동	양대동	장흥동	갈산면
	24	7	2	4	3	1	4
	온석동	장동					
1	1						
서천군 2,760명	서천읍	장항읍	마서면	기산면	화양면	한산면	마산면
	456	101	701	92	614	374	139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시초면	
	127	19	43	40	28	26	
아산시 1,813명	권곡동	남동	도고면	둔포면	득산동	모종동	배미동
	55	2	138	86	11	145	10
	방축동	법곡동	선장면	송악면	신인동	신창면	인주면
	32	20	83	31	6	133	75
	배방읍	용화동	풍기동	음봉면	장준동	좌부동	초사동
	348	120	84	71	23	14	3
탕정면	실옥동	영인면	신동	염치읍	온천동	읍내동	
102	29	73	6	48	63	2	
예산군 5,028명	대흥면	광시면	신암면	덕산면	신양면	삽교읍	대술면
	129	90	237	507	206	796	115
	예산읍	봉산면	응봉면	오가면	고덕면		
953	325	297	146	1227			
천안시 4,235명	성환읍	목천읍	광덕면	동면	두정동	성거읍	성정동
	346	276	201	68	231	81	129
	성황동	직산읍	수신동	풍세면	원성동	영성동	불당동
	12	256	61	362	59	10	209
	북면	구성동	백석동	신부동	청수동	성남동	오룡동
	378	42	144	94	65	103	1
	사직동	안서동	차암동	청당동	구룡동	입장면	외촌동
	2	44	40	153	7	75	6
	문화동	봉명동	일봉동	다가동	신당동	성성동	대흥동
	4	54	1	7	22	33	6
	삼룡동	병천면	업성동	쌍용동	용곡동	유량동	부대동
	15	80	5	297	98	9	6
신방동							
143							
청양군 1,324명	남양면	대치면	목면	비봉면	운곡면	장평면	정산면
	425	47	20	436	24	24	31
	청남면	청양읍	화성면				
29	259	29					
태안군 278명	태안읍	안면읍	남면	고남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189	20	8	2	26	18	8
	근흥면						
7							
홍성군 477명	홍성읍	결성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구항면	서부면
	212	8	18	25	19	14	33
	은하면	갈산면	광천읍	홍북읍			
5	11	17	115				

[2. 충남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도지사추천 5명, 농민단체추천5명, 농업분야전문가 3명)를 두고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②지급시기 및 지급액 ③농민수당에 관한 각종교육 및 홍보 ④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1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 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② 300평(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보유 또는 위탁농
- ③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④ 1년 중 법적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충청남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조례안의 특징

농민의 기본권, 농업의 미래! 충남 농민수당!

1. 농민수당은 농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된 농민수당은 지방선거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전남에서 전국최초로 시행, 충남에서는 부여가 시행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학습과 토론을 이어갔고 농민을 사랑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동참해주셨습니다.

2. 농민수당은 농민의 권리와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묻혀있던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1조 목적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3.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마을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농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4조 농업인의 참여에 명시했습니다.

4. 소외와 배제 없이 모든 농민이 해당됩니다.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이 이제 농민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 농민등록제 마련을 명시했습니다.

8조에 명시하고 이후 과제는 부칙2조에 실었습니다.

5. 월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갑니다.

농민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2~3천억원의 농민수당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충남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9조에 명시했습니다.

6.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협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도지사의 의도대로 구성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위원회 방식이 아닌 농민들이 책임있게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6조에 협치의 정신을 살렸습니다.

새로운 질서! 농민수당 제정으로 농정의 방향을 바꾸자!

주민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는 지난 두 달 동안, 충남 곳곳은 농민수당은 무엇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이며, 농민으로서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한 치도 나아지지 않는 농업과 농촌에 대해 비로소 농민 스스로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용광로였다.

그 증거로 35,389명이 꺾꺾 눌러 쓴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지역 소멸 위기를 인지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농업은 퇴행을 참고 버텨야 하는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산업이며 농촌은 도시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물어두는 곳이었다. 말로는 농촌에 돈 다발을 쏟아 부었고, 천지개벽할 가치들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농업 예산은 매년 실질적 감소추세이며, 농촌에 관한 온갖 지표들은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60%, 농촌의 양극화 비율 심화, 식량자급률 26%,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5%, 중위 가구 1년 농업 소득 600만원,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모든 농촌이 급격한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정부나 언론도 모르지 않지만, 아무도 이 방향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불쌍하다고, 안 됐으니 우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농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농민이 사는 길. 농업이 사는 길. 농민도, 농업도, 식량도 없습니다.

1. 농민수당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농촌이 지켜야 되는 가치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농업의 근본 문제입니다.

2. 농업 규모와 성과가 아닌 농민 개개인을 존중하고 농정 전면에 등장시켜야 한다.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민이어야 한다.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정하는 것은 수당으로서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농촌 사회에서 개별 농민이 정책과 산업의 주체로 나서는 의미가 있다. 농민이 농촌의 주인으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농민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농촌 사회의 자정능력과 주인으로서 역할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행정과 의회는 농민수당 주민 발의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하고 심판하는 일만 하지 말고, 보다 창조적인 충남의 이야기를 만들어 감시다. 제한된 예산, 기존의 제도에 대한 핑계는 그만 하고. 전남, 전북의 선례를 넘어서 충남의 농민수당을 만들어 감시다.

4. 농민수당! 농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만든 정책

농민의 절실한 마음을 농민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표현해 주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충남 곳곳을 누빈 1,000여 명의 수임인들, 35,389명의 청구인들이 여기 있다. 모두들 “그냥 우리 일이었다”고 하지만,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수당을 도민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여군농민수당 지급

- 농업의 자연경관, 환경, 식량안보 등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유지·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
- 농민의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농민 자격 수당」 도입 추진 ※ 민선7기 공약사업

□ 사업개요

- 지급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13,000명(축산 임업 어업 농가 포함)
- 지급금액: 농가당 14만원 균등 지급
 - 2019~2020년까지는 농가당 지급, 수당금액 14만원(추정대상자 13,000명)
 - 2021년부터는 경영체등록 농민 개별 지급, 수당금액 24만원(추정대상자 20,000명)
- 지급방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여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

□ 그동안 추진상황

- '18. 9. 13.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농민수당 토론회
- '18. 10. 29. 부여군 농민회·여성농민회와의 토론회
- '18. 11. 28.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7명(군의원 1, 농업인 단체 11, 농협 2, 전문가 1, 행정 2)

(`19.1~6월중 추진상황)

- '19. 2. 27.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군민설명회 개최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군민 200명 참석, 농민수당 지원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 '19. 5. 17.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농민수당 지급대상 범위 및 조례 제정안 확정
- '19. 5. 23.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 '19. 5. 28.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9. 6. 28.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7. ~ 9.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19. 10. ~ 12.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정비
- '19. 12.13 수당지급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의 제언

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박영숙

지난 여름부터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제 충남형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농민수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에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식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현재, 대개는 농가 또는 농어가당 지급을 하고 있으나,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농민개별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농민개별지급 방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고 여성과 청년 농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합리적인 지급방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가 될 가능성, 수당을 받을 개별 농민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부적격한 농민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별 농민을 파악할만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이를 파악하여 실제지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지의 조례나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경작여부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올해 지급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절차를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별다른 절

차없이 이장이 신청서를 취합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공동경영주라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단위에서 농민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에 대한 통계도 정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통계의 신뢰도를 뛰어넘어 농민수당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충남도 농민수당에 대한 두 개의 조례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한 보상차원의 농민수당의 기본성격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길 바란다.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과제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박 상 우

- 박경철 박사의 발표기조에 공감함. 특히 (1)개별 농민, (2)할증방식 적용, (3)농업경영체 지급시... 그 지급방식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급액, 장단점을 비교하면서도 (농민기본소득이 개인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 ‘개별 지급’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개별지급에 관한 쟁점과 제안까지 하고 있기에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자리를 빌어 농민기본소득 전도사인 박경철 박사를 비롯하여, 긴 시간 동안 고심해온 도의회와 주민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조례제정운동본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함.
- 개인적으로 발표자나 농민단체, 정의당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본질적 보완적 문제의식만 개선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코자 함.
- 한국사회 농업/농촌과 마을공동체의 붕괴,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직면하고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되지도 않는 농업경쟁력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힘들더라’는 농업/농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보상 성격의 농민수당이든, 생존권적 성격의 농민기본소득이든 간에 앞으로 논의가 더 진전될 것이고, 기본소득제에 걸맞게 ‘제대로’ 변화·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음.

-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충남형 농민수당’이라 부르기에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음.
- 당장 내년부터 농업소득보전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고, 공익형 직불제까지 왔다면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
- **(개별지급! 당장 못한다 치더라도)** 기본소득제의 ‘무조건적-개별적-정기적-현금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충남형 농민수당’이 설계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에 의문이 듦.
-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다른 지방정부와 별다를게 없는 **(정책적 효과나 파급력도 없을)** ‘이미 다하고 있는, 비슷비슷한 또하나의’ 농민수당을 ‘충남형’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함.
- 박정철 박사의 제안대로 농민기본소득의 본질에 맞는...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농민수당을 선도해갈 필요가 있음.

농민수당 자료와 동향을 살펴보다가 오버랩된 것이... 지난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보고대회였음. 대통령 연설까지도 감동적이었으나, 정작 국가와 3농 사이의 사회협약에 관한 국민 의제는 하나도 전파되지 않았고, 같은 날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미래 2045, 4대 전략과 22대 과제 어디에도 3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과 같은...

- **(예산 문제, 농업인 기준과 통계 문제, 부당수령 문제 등)** 어렵고 문제가 있는 지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혀가되, 그 맥락은 농민기본소득의 관점에서 개별지급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농민수당 지급액을 산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으로 밀돌 빼서 피는 방식일지라도, ‘농민당’, ‘분기별’ 10만원씩 ‘월급’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후에 지속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로, 농촌살이 버틸 힘이 되어지게끔) ... 농민 기본소득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급대상’이라는 단추를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박경철 박사의 지적대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농민수당에서 야기된 몇가지 문제들도 해소되어가지 않을까 싶음.

- 지방소멸의 위기,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이 많이 있어야 지속가능해짐. 조금은 멀고 길게 내다보며 농민수당 지급방식이나 과제들을 접근해갔으면 하는 바램임.
-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등과 같이 충남도 시군 단위로 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야할 법제 개편,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논의, 연구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 더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함.

